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7
----------	----

2022. 10. 13.(목)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박병천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2년 10월 5일

다. 회부일자: 2022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2022년 10월 13일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병천 의원)

가. 제안이유

○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균형잡힌 식생활 개선과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역량을 함양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교 채식급식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채식급식의 날 운영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서성범)

가. 조례 개정 이유

-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채소 섭취로 심혈관 질환이나 위암, 대장암과 같은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1인당 과일, 채소 섭취량을 400g 이상 권장하고 있고,
- 국제연합(UN)은 과일과 채소가 식량 안보를 지켜 시민 영양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2021년을 ‘국제 과일과 채소의 해’를 지정하여 각국 정부에 과일·채소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촉구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채식선택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법률제정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채식을 권장하는 추세임.
 - 미국에서는 병원의 비건채식 선택권 보장 법안을 제정했고, 뉴욕시는 2019년부터 모든 공립학교의 월요일 아침과 점심 메뉴에 채식식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학교 점심에서 채식을 보장하고 있음.

- 포르투갈에서는 2017년 모든 공공기관 구내식당 메뉴에 채식옵션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프랑스는 2019년부터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주1회 채식급식을 의무화하고 있고
- 네덜란드에서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서 채식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음.
- 핀란드는 군대에서 매주 2회 채식식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동 청소년기에 지나친 육류 중심의 식습관이 소아비만과 당뇨, 면역계 질환 등의 질병을 증가시키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채식급식을 높여 아동 청소년기의 균형잡힌 올바른 식습관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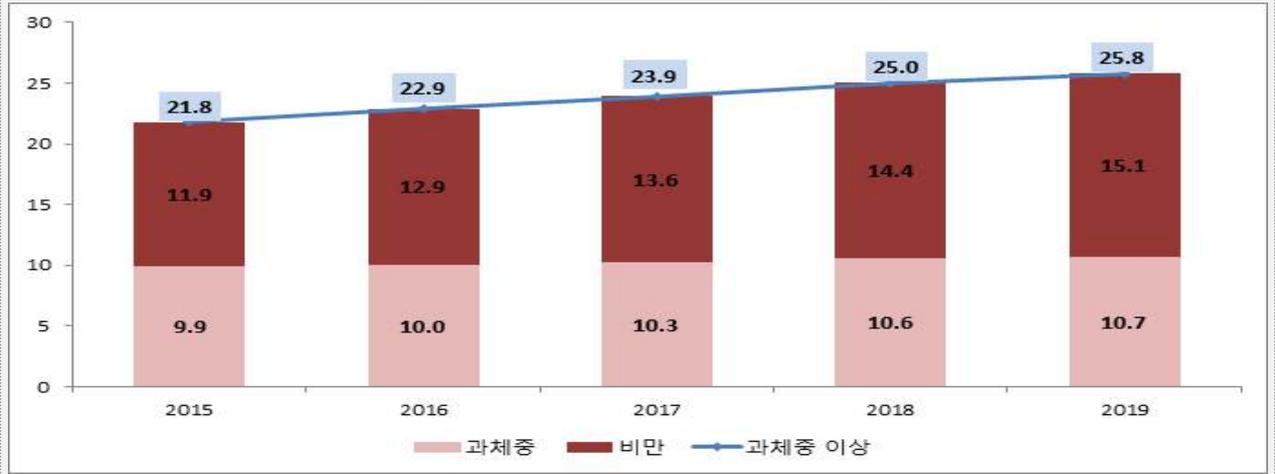
○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자료 결과, 과체중¹⁾이상 비율은 25.8%(비만 15.1% + 과체중 10.7%)로, 최근 5년간 매년 1%p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권장 식습관 지표인 ‘채소 매일 섭취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았고, 모든 학교 급에서 30% 미만으로 나타남

1) 비만도 평가기준은 2017년 개정된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체질량지수 기준)를 적용하였고, 최근 5년간 자료도 동일 기준 적용하여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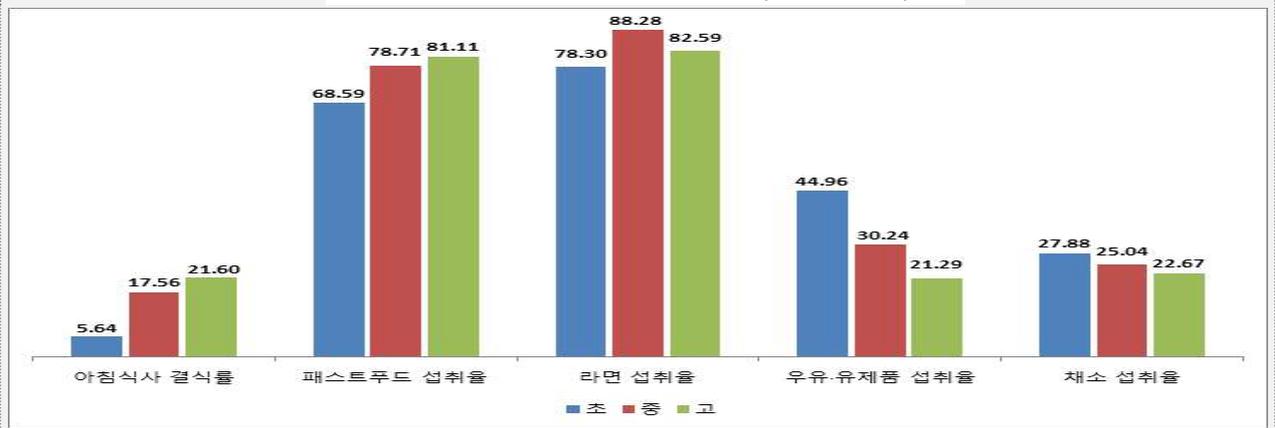
판정	판정(분석) 기준
과체중	체질량지수(BMI)를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도표에 대비하여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인 경우
비만	체질량지수(BMI)를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도표에 대비하여 95백분위수 이상인 경우

* 출처: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해설집(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 과체중 및 비만 비율(%) >



< 초·중·고 학생의 식습관(단위: %) >



지 표 (%)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아침식사 결식률	5.64	17.56	21.60	6.07	16.23	19.69	4.65	13.49	18.11	4.17	12.60	16.81	3.93	12.08	15.12
주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68.59	78.71	81.11	65.98	77.66	80.54	68.00	78.50	80.47	64.64	76.08	77.93	62.89	74.90	76.61
주1회 이상 라면 섭취율	78.30	88.28	82.59	77.06	88.03	82.24	76.39	87.69	81.37	74.52	86.62	80.48	73.15	84.98	77.59
우유·유제품 매일 섭취율	44.96	30.24	21.29	46.62	30.96	21.27	48.20	30.73	19.47	48.43	30.77	20.07	50.98	31.01	21.72
채소 매일 섭취율	27.88	25.04	22.67	28.87	24.90	22.79	31.27	26.20	22.82	30.73	28.03	22.62	31.91	27.92	23.99

○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²⁾,

-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을 명시³⁾하고 있음.
- 최근 학생 건강증진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학교급식에서의 채식 식단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 같은 측면에서 2020년 4월 6일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채식주의자들이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채식을 하는 학생을 고려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학교급식' 에서 채식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음.
- 또한 2021년 6월 4일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해 비건⁴⁾ 학생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다른 학생에게도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는 국가권익위원회 진정이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채식급식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음.

2) 학교급식법 제11조(영양관리): ①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학교급식 시행규칙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②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식단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발전을 고려할 것
2.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3.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4.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5.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4) 비건(vegan): 모든 육식을 금하고, 식물성 식품인 채소·과일·곡류만 섭취하는 채식종류

- 시도별로 채식급식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월 또는 주별 정기적으로 채식급식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 타 시도 채식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도교육청	조례명	제정일
부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 5. 26.
인천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 4. 21.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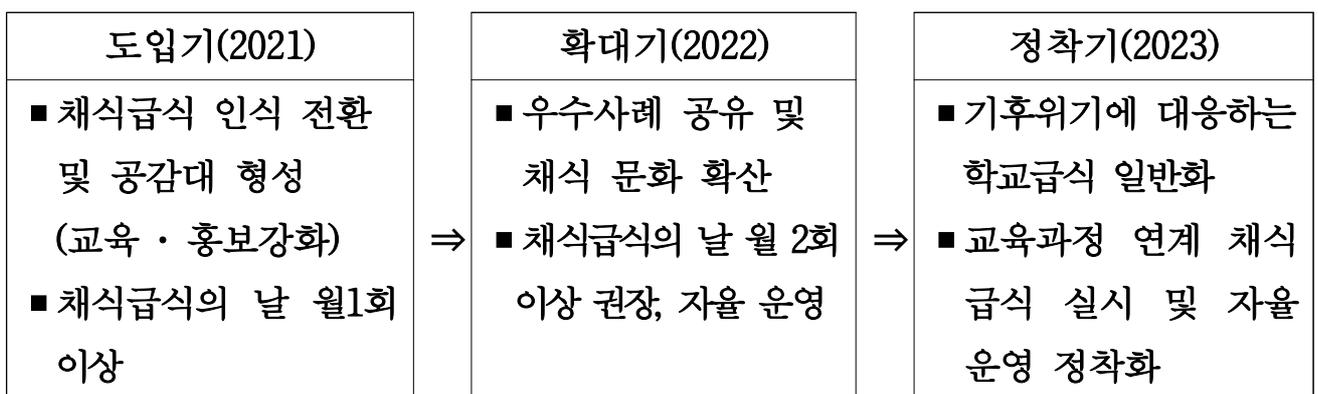
■ 타 시도 채식급식 운영 현황

시·도교육청	채식급식 운영 주요 내용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4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월 2회 채식급식을 실시하는 ‘그린급식의 날’ 을 운영하고 있고, ■ 생태전환교육 중점·선도학교 23곳에서는 ‘그린바’ 를 설치하여 채식 식단만 따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채식 선택제’ 를 시범 운영하고 있음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부터 모든 초·중·고에서 ▲ 월 2회 채식식단 제공 ▲ 매일 별도의 채식식단 제공, ▲ 기존 식단에 채소 반찬 추가 등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페스코식단⁵⁾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V.T.S-DAY: Vegetarian Trip of School meal),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부터 매주 ‘고기 없는 월요일’ 운동을 매주 운영하고 있음.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32개 학교에서 주1회 혹은 월 2회 ‘채식의 날’ 과 주2회 이상 채식 및 과일메뉴를 추가 제공하는 ‘저탄소 채식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9월부터 ‘다채롭데이’ 라는 이름으로 월 1회 이상 채식급식을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대구, 경북,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식 급식 연구·선도학교’ 를 지정·운영

- 충청북도교육청도 2021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채식 급식의 날(고기 없는 날)’ 을 월 1회 이상 운영을 권장하고 있고, 2021년 5월부터는 TV·라디오 홍보, 각급 학교 배포용 홍보 리플릿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 2022년에는 ‘채식급식의 날(고기 없는 날)’ 을 월 2회 이상 확대 운영 하고, 기후 환경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자료 제공과 바른 채식 식습관 형성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 홍보자료 20종을 제작·제공하는 등을 통하여 채식문화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채식급식의 날’ 운영 현황 및 추진 계획



※ 자료제공: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 안전과 급식팀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균형잡힌 바른 식습관 습득과 탄소중립·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식생활 실천역량을 함양하고 건강을

5) 페스코(pesco-vegetarian): 식물성 식품과 유제품, 알류, 어패류와 생선을 섭취하는 채식종류

증진시키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식급식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학교 특성에 맞는 채식급식 운영을 각각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로 하고, 안 제4조에 채식 급식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채식급식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이를 통한 학교 현장에서의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채식 급식 시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5조에 월 1회 이상 ‘채식급식의 날’ 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은 각급 학교 특성과 실정이 반영된 채식급식 운영으로 학생들의 균형잡힌 건강과 식생활 개선과 저탄소 환경보호 실천의식을 도모하고,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채식급식의 날’ 운영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에 채식급식 시행 현황과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채식급식 정책 개발과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수립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채식급식 활성화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 판단됨.
-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채식급식이 균형 잡힌 건강과

신체발달, 탄소중립 환경보호에 미치는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하여 채식에 대한 인식개선과 채식섭취를 늘려나가는 식습관 실천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교육과 홍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식과 건강, 환경과의 관계와 영향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담은 채식급식 홍보책자나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환경교육과 보건교육 과정과 연계한 채식 식생활교육 등이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생의 건강증진과 저탄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보호를 위해 채식 식단 증진을 통한 균형잡힌 학교급식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 현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비만과 당뇨, 고지혈증 등과 같은 대사질환 발생 증가에 대한 우려와 대책 마련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육식을 지양하고 채식을 지향하는 식생활 개선 정책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시기성이 인정되며,
- 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 충청북도교육청은 향후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 확대와 채식급식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채식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채식급식 활성화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실효성 있는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능력 함양을 위해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급식을 말한다.
2. “채식급식”이란 식물성 식재료(우유·유제품, 동물의 알, 해산물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학교급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식생활의 다양성과 식습관의 개선 등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이나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채식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채식급식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채식급식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식급식 활성화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채식급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제5조(채식급식의 날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채식급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채식급식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해 축제 또는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건강이나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급식이 필요한 학생 현황, 채식급식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채식과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채식급식에 관한 전문성 향상과 효과적인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교육감은 채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채식급식 관련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학교급식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 3. 21., 2019. 12. 10., 2020. 1. 29., 2021. 3. 2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5조(채식급식의 날 운영), 제7조(교육 등), 제8조(홍보)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 내에서 '채식급식의 날' 운영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